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5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여비조례상의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준용 규정에 위 규칙의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 지급 및 여비조례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상의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준용 규정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의 내용을 삽입(안 제5조제4호)
- 나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다. 법조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등으로 법률 순화

3. 주요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18조제1항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2. 4. 12. ~ 2012. 5. 2. (제출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3)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(가정복지과-18676호)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.)”는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”를 “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로,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, “일괄지급”를 “일괄 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월15일”을 각각 “월 15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월액여비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”를 “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공무원 여비규정」”을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”으로, “[별표 1] 여비지급구분표의”를 “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 [별표 1]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”를 “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 『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』에 의하여”를 “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”을 “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“여비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여비지급은”으로, “준용함에 있어서는”를 “준용하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

정 별표1에 의한"은 없는 것으로 본다."를 ""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및 별표 1"은 "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"로 본다."로 하고,

같은 조 제7호 중 "동조제2항"을 "같은 조 제2항"으로, "동조제4항"을 "같은 조 제4항"으로, "동조제3항"을 "같은 조 제3항"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8호 중 "규정 [별표 1]"를 "규정 별표 1"로, "해당공무원란"은 "해당 공무원란"으로, "" 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"은 " 「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""은 ""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""으로, ""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""은 ""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""으로, ""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""은 ""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""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</u> <u>여비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</u> <u>여비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월액여비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----- 예산의 범위안에서 ----- 일괄 지급-----.</p> <p>② ----- 월 15일 ----- ----- 월 15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구청장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</p>	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---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라 한다)[별표 1]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.</p> <p>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[별표1]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.</p>	<p>----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규정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 각 호-----</p>
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『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』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----- ----- -----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 -----</p>
<p>제5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 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 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 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”은 없는 것으로 본다. 5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 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 7.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	<p>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 여비지급은 ----- ----- ----- 준용하는 경우에는 - -----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----- 3. ----- ----- 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은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 5. ----- ----- ----- 6. ----- 7. -----

현행	개정안
<p>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동 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동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8. 규정 [별표 1]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은 “「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----- 같은 조 제2항-----</p> <p>-----</p> <p>같은 조 제4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같은 조 제3항-----</p> <p>-----.</p> <p>8. 규정 별표 1 ----- 해당 공무원란 --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-----</p> <p>-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-----</p> <p>----- “「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」”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</p>